

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
수급자 (신청인)	성명		생년월일	성별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
	주소				
	신청 사유	[]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은 자			
		[]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			
[] 수급자가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					
수령기간		년	월부터	년	월까지 (개월간)

※ 아래 후견인란은 「민법」에 따른 후견인만 작성합니다.

후견인	성명		생년월일	
	전화번호		234-234-24-2344	휴대전화번호
	주소			
대리 수령인	형제			
	성명		생년월일	
	대구 북구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
	010-9999-9999		010-9999-9999	
주소		나나나	040310	
수급자와의 관계				

지급계좌	N/A		
금융회사()	N/A	계좌번호()	N/A

N/A
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.

2022년 10월 25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V

첨부서류

-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: 피성년후견인인 사실,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, 치매 또는 거동 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
-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, 친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010-8667-5797 010-8667-5797

합시현	유의사항	2005-02-10	남
1.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			